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제정) 2008.11.20 기타 제 751호 (일부개정) 2009.08.10 조례 제 791호 (일부개정) 2011.06.07 조례 제 877호 (일부개정) 2012.05.16 조례 제921호 (일부개정) 2014.10.15 조례 제1070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223호 (일부개정) 2017.04.10 조례 제1240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1326호 (일부개정) 2019.10.16 조례 제1436호 (일부개정) 2020.12.29 조례 제1564호 (일부개정) 2021.12.27 조례 제16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2014.10.15, 2019.10.16.)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5)
 -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 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 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2017.12.29, 2019.10.16.)

- 3. 삭제 (2016.12.23)
- 4. 삭제 (2016.12.23)
- 5. 삭제 (2016.12.23)
- 6. "순직군경 유족"이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 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12.29)(개정 2019.10.16.)
- 7. "전상군경"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 8. "공상군경"이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 9. "전상군경 유족"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 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10.16.)
- 10. "공상군경 유족"이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10.16.)

- 11. "무공수훈자 유족"이란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10.16.)
- 12. "보국수훈자 유족"이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2.27.)
- 1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말한다.(신설 2019.10.16.)
-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 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지급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하 "참전유공자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법제79조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7, 2014.10.15, 2017.12.29, 2019.10.16., 2021.12.27)
- 제4조(지원사업)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개정 2017.12.29, 2019.10.16., 2021.12.27.)

-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단,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개정 2012.5.16, 2014.10.15, 2016.12.23, 2020.12.29.)
- 2. 전몰군경 유족에게 유족수당 월 10만원 지급(개정 2014.10.15, 2016.12.23, 2017.12.29, 2019.10.16., 2021.12.27.)
- 3.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보국수훈자 유족에게 유족수당 월 5만원 지급(신설 2019.10.16., 2021.12.27.)
-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 월 5만원 지급(신설 2019.10.16., 2021.12.27.)
- 5.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개정 2014.10.15, 2017.12.29)[제3호에서 이동 2019.10.16.]
- 6. 도서지역 참전유공자 사망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위로금 지원과 별도로 장례비용 50만원을 추가 지급 (개정 2011.6.7)[제4호에서 이동 2019.10.16.]
- 7.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게 명예수당을 월 5만원 지급(신설 2019.10.16.)
- 8. 그 밖에 참전유공자 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9)[제6호에서 이동 2019.10.16.]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지원사업이 중복될 때에

- 는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신설 2019.10.16., 2021.12.27.)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은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참전유공자 명단을 받아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2021.12.27.)
 -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수급권자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4.10, 2017.12.29)
 - 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은 지급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1.12.27.)
 - ④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 ⑤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유족수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망위로금 및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례비용을 지급받을 대

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과 장례비용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12.29, 2019.10.16., 2021.12.27.)

⑥ 삭제(2021.12.27.)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1.6.7)
 -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및 관련기관 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한 때 (개정 2017.12.29)
-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지급대상자가 사망일 이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 2. 지급대상자에게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 3.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② 시장은 수당을 환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8조 신설 2019.10.1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9.10.16.]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8.10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6. 7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2011.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5. 16 조례 제921호)

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참전명예수당은 2012 년 4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10.15 조례 제10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분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3,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같은조 제2 호의 수당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10,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9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호 및 제3호,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0.16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64호, 2020.12.29.)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62호, 2021.12.27.,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